

[양식 제4호]

구분		양 부				양 모			
① 양친	성명	한글 (성) / (명)	본(한자)		한글 (성) / (명)	본(한자)			
		한자 (성) / (명)	출생연월일		한자 (성) / (명)	출생연월일			
	주민등록번호	-			주민등록번호	-			
	등록기준지								
	주소								
② 양자	성명	한글 (성) / (명)	본(한자)		주민등록번호		-		
		한자 (성) / (명)	성 별 [1]남 [2]여		출 생 연 월 일				
	등록기준지								
	주소								
③ 양자의 친생부모	부	성명	등록기준지		주민등록번호		-		
	모	성명	등록기준지		주민등록번호		-		
④ 기타사항									
⑤ 입양허가법원					허가일자	년 월 일			
⑥ 동의자	부	성명	㉠ 또는 서명						
	모	성명	㉠ 또는 서명						
	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				심판일자		년 월 일		
	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								
양자의 배우자		㉠ 또는 서명			주민등록번호		-		
⑦ 신고인	양부	㉠ 또는 서명			전 화				
					이 메 일				
	양모	㉠ 또는 서명			전 화				
					이 메 일				
	양자	㉠ 또는 서명			전 화				
					이 메 일				
법정대리인	[1] 부모	부	㉠ 또는 서명		전 화				
					이 메 일				
	[2] 후견인		㉠ 또는 서명		전 화				
					이 메 일				
⑧ 제출인		성 명			주민등록번호		-		

※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,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.

## 작성 방법

- ※ 등록기준지 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.
- ※ 주민등록번호 :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(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)를 기재합니다.
- ①란 및 ②란 :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.
- ④란 :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 합니다.
  -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
- ⑤란 :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,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,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 를 기재합니다.
- ⑥란 :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.
  -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
  -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,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.
  -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 ⑦란 :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하며,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“○”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(또는 서명)합니다.
- ⑧란 : 제출자(신고인 여부 불문)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[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]

## 첨부 서류

- ※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합니다.
- 1.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.
- 2.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(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,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).
- 3. 입양동의서 1부(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,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“동의자”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).
- 4.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
  -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(예시 : 주민등록 말소·거주불명 등본)
- 5.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
  -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: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원본
  -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: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(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) 사본 1부
- 6.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,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.
- 7. 신분확인[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]
  -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
  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
    - 신고인 불출석, 제출인 출석의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)
   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(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,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)
  -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(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)
    -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: 신분증명서
    -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: 제출인의 신분증명서
    - 우편제출의 경우 :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
- ※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.
- ※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